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195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승강기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완성된 승강기 발전 로드맵을 제도에 반영하고, 9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편으로 발생 빈번한 법체계를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률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강제인증대상 승강기 품외의 기타 부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인증 제도 도입(안 제44조)
-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당승강기에 대한 일상 점검 의무화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안 제16조)
- 다.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은 모두 시·도에 등록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인력은 승강기 보수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기술인력 관리 강화(안 제9조)
- 라. 자체 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보수업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인력이 승강기 보수에 참여한 경우 보수업 취소(안 제6조 제1항 제1호)
- 마. 산자부장관이 검사를 실시 하되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승강기 검사를 산자부장관이 직접 한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 하도록 함(안 제22조)
- 바. 검사를 실시 하여도 결함 원인을 불명확한 경우 검사기관은 정밀안전진단(안 제11조)을 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제도 도입(안 제1조)
- 사. 15년 이상 된 승강기 또는 연 3회 이상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의 경우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관리(안 제3조)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http://www.mocie.go.kr))경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악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선택번호
- 다. 기타참고자료

- 라.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427-716
  - 전화: 02)509-7238~41
  - 팩스: 02)509-7305

전자우편 [gth0130@mocie.go.kr](mailto:gth0130@mocie.go.kr)

※ 홈페이지([www.mocie.go.kr](http://www.mocie.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7 - 248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중 개정 고시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p>제10조(신개발품의안전기준적용) ① 신개발품  <u>으로</u> 당해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개별안전기준                      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p> <p>1. ~ 3. (생략)                      4. &lt;신설&gt;</p> <p>② (생략)</p>	<p>제10조(신개발품등의안전기준적용) ① 신개발  <u>품등으로</u> -----                      -----                      -----                      -----</p> <p>1. ~ 3. (현행과 동일)                      4. <u>특허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수구조용품등</u>  <u>으로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전</u>  <u>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u></p> <p>② (현행과 동일)</p>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시험항목에 대한 추가 경과조치) 이 고시 K 60884-1의 14.26항(과부하보호장치부착)은 이동형 콘센트 2구 및 3구에 대해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취지

- ① 적용할 수 있는 국제기준 등이 없는 신개발품 등에 대한 인증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진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
- ② 이동형 콘센트에 대한 과부하보호장치 부착을 국산업규격(KS C 8305)에 일치시켜 4구 이상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2구 및 3구에 대하여는 적용시기를 1년 연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① 특허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수구조용품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으로 도입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10조제1항제4호를 신설함
- ② [별표 1]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884-1(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14.26항(과부하보호장치부착)의 이동형 콘센트 2구 및 3구에 대해 적용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08. 7. 1부터 적용함